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 우선주의’ 정책
도입 등 가정폭력 단계별 법집행 과정
연구를 통한 가정폭력 대응 체계 개선
(개인훈련)**

2019년 12월

**경 찰 청
송 현 건**

〈 목 차 〉

[국외훈련개요]	4
I. 서론	9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9
2. 연구 목적과 방법	12
가. 연구 목적	12
나. 연구 내용	13
II. 미국 가정폭력 의무체포제도의 의의	14
1. 의무체포제도의 연혁	14
가. 과거~ 1970년대	14
나. 1980년대 미네아폴리스 가정폭력 실험	15
다. 1994년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이후	18
2. 미국 주별 의무체포제도	19
가. 의 의	19
나. 미국 주별 의무체포제도의 종류와 내용	20
3. 미국 경찰의 의무체포제도 집행 매뉴얼	27
가. 웨스트 라피엣 경찰국 정책 매뉴얼	28
나. 컴벌랜드 경찰국 정책 매뉴얼	32

다. 브레머튼 경찰국 정책 매뉴얼	34
라. 솔트레이크 시티 경찰국 정책 매뉴얼	36
마. 패서디아 시티 경찰국 정책 매뉴얼	40
4. 소결	42
III. 미국 가정폭력 의무체포제도의 효과	45
1. 의의	45
2. 의무체포제도의 효과	46
가. 체포되는 여성	46
나. 폭력의 증대	47
다. 신고의 감소	50
3. 소결	52
IV. 결 론	54
V. 참고 문헌	57

〈국외훈련개요〉

1. 훈련국: 미국
2. 훈련기관명: 퍼듀 홈랜드시큐리티연구소
(Purdue Homeland Security Institute)
3. 훈련분야: 형사사법(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의무체포제도 연구)
4. 훈련기간: 2019. 6. 9.~ 2019. 12. 7.

〈훈련기관 소개서〉

명 칭	퍼듀 홈랜드 시큐리티 인스티튜트 (Purdue Homeland Security Institute)
소 재 지	Purdue University, 610 Purdue Mall, West Lafayette, IN, 47907, ※ www.purdue.edu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듀대학교는 1869년에 사업가 존 퍼듀가 기부하여 설립된 미국 인디애나 주 웨스트 라피엣에 있는 공립 대학으로 인디애나 주에서 학생 수 기준으로 두 번째로 가장 큰 대학(전체 학생수는 약 4만여 명) ○ 2019년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미국 전체 대학교 중에서 56위, 공립대학교 중 17위로 평가, 공과대학은 '19년 기준 7위 기록 ○ 퍼듀 대학교 시스템에 속해 있는 각각의 고등 교육 기관들은 같은 이 사회의 감독하에 있지만, 자체적인 교수진과 입학 정책을 유지 ○ 911 테러이후 지역안보를 위해 군인, 경찰, 소방 등 안보기관이 재난·테러 발생에 긴밀히 협의하고 대응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퍼듀 대학교 산하에 퍼듀 홈랜드 시큐리티 인스티튜트(Purdue Homeland Security Institute)를 신설, 운영중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culty : 2명 ○ Research Assistants : 7명 ○ Research Partners : 8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terbury-Muscatatuck Training Center - Crane Naval Surface Warfare Center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Indiana Department of Education - Indiana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Indiana National Guard - Indiana State Department of Health - Indiana State Police
주요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듀 대학장 : Mitchell E. Daniels, Jr. ○ 퍼듀 홈랜드시큐리티 인스티튜트 소장 : J. Eric Dietz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훈 련 자	송 현 건	직 급	경 정
소 속	서울지방경찰청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훈 련 국	미 국	훈 련 기간	2019. 6. 9 ~ 2019. 12. 7.
훈 련 기관	퍼듀 홈랜드 시큐리티 연구소 (Purdue Homeland Security Institute)	훈 련 구분	단 기
훈 련 목적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의무체포제도 연구	보 고 서 매 수	60매
내용 요약	<p>최근 국내에서는 심각해지고 증가하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의무체포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p> <p>가정폭력 신고현장에서 경미한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체포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다소 어려워 보이며 특히 가정폭력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폭행, 협박 등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포시 불법체포의 여지도 있어 경찰관은 가정폭력 신고현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체포하는 것을 꺼려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에서 체포를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무체포제도와 같은 입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p> <p>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무체포제도 도입에 앞서 의무체포제도를 이미 시행중인 미국의 의무체포제도의 연혁, 미국 주별 의무체포정책의 종류와 내용, 미국 경찰의 의무체포정책 집행 매뉴얼과 의무체포정책에 대한 비판자들의 이유와 논거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해보았다.</p> <p>의무체포제도는 가해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체포를 통해 보복범죄와 재범을 방지하고 가정폭력 발생 자체를 억지시키는데 목적을 둔 제도로 체포여부에 대한 법집행자의 권한 정도에</p>		

<p>내용요약</p>	<p>따라 법집행자의 의무적 체포(Mandatory arrest, 23개주), 재량적 체포(Discretionary arrest, 6개주), 우선적 체포(Preferred arrest, 22개주)로 구분된다.</p> <p>그중 의무적 체포(Mandatory arrest)는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관으로 하여금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게 함으로써 피혐의자의 인권침해, 가정폭력 신고 수 감소 등 의무체포제도의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비난이 제기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의무체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의무적 체포(Mandatory arrest)보다는 재량적 체포(Discretionary arrest)를 도입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p> <p>1970년 후반부터 의무체포제도를 채택하고 이를 입법화하여 시행중인 미국 의무체포제도는 같은 제도를 통해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의무체포제도 도입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시행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자 몇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p> <p>첫째, 의무체포제도 도입을 위해 의무체포제도의 효과를 보다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p> <p>미국에서도 의무체포제도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자료가 없어 실제 의무체포제도가 가정폭력을 줄이고 재범을 억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가정폭력 초범자의 최초 형사처분 결과에 따른 재범율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체포가 가정폭력 재범율을 낮추는 것에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p>
-------------	--

<p>내용요약</p>	<p>둘째, 의무체포제도 중 의무적 체포보다는 재량적 체포를 도입하여 의무체포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관련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의무체포제도가 표현상 의무적 체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가정폭력 체포제도’ 등으로 표현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p> <p>셋째, 재량적 체포제도를 도입할 경우, 피체포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보다 일관된 법집행을 위해 체포를 위한 조건인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를 명시하고 상당한 이유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보다 상세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관이 합법적이고 타당한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어느 경우에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p> <p>넷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기소강제주의(No-Drop)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 미국은 1990년대 초반에 가정폭력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기소하는 의무기소 정책(No-Drop)정책을 채택하였다. 이 정책은 피해자의 기소에 대한 의지와 관계없이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기각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참여를 강제하고 사건 기각율을 감소시켰다는 평가(의무기소 정책 채택 전 최소 50%에서 최대 80%까지 오른 기소 기각률이 채택 후 10%대로 낮아짐)를 받는다. 이는 체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체포이후 불기소 처분시 가해자가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둔감해 질 수 있어 오히려 재범 발생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역시 기소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p>
-------------	--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前 남편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 되었다. 특히, 피해자가 前남편으로부터 반복적인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등 국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국가는 없었다’(한겨레 '18.10.30), ‘가정폭력에 안일한 대응이 살인 불렀다’(한국일보 '18.10.30)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에 대한 검거건수는 감소하고 재범률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

구분	16년	17년	18년 6월
검거건수(건)	45,619	38,489	17,645
재범률(%)	3.8%	6.1%	8.9%

이에 대해 가정폭력 처리시 높은 현장종결 비율*과 낮은 입건율(약 17%)이 가해자로 하여금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를 떨어뜨려 재범을 증가시키고 폭력의 양상을 중하게 키워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하는 문제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 2018년 1월~9월 가정폭력 신고건수 189,643건中 현장종결 101,016건(53.5%)

한편, 가정폭력은 범죄신고 비중에서도 2018년 1월 1일~11월 7일까지 112신고 기준으로 가정폭력은 20만 2826건, 절도는 19만 2649건 발생하여 가정폭력이 생활주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처럼 심각해지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응하고자 정부(여가부, 법무부, 경찰청)는 2018년 11월 가정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합동 발표하였다. 정부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엄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지원강화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등을 영역별 과제들로 선정하였다.

그중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위해 가정폭력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였다. 이는 보복범죄에 대한 공포로 가해자를 신고한 뒤에도 처벌을 요구하지 못하는 가정폭력 범죄의 특성이 높은 현장종결 비율로 이어져 재범 위험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중하게 키운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 할 지라도 현행범 체포요건이 되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가해자를 현행범 체포하도록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는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가 피해자 중심으로의 가정폭력 대응절차 개선을 요구하며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는 의무체포제도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의 요건으로 범죄의 가벌성, 현행성, 접촉성, 명백성 외에도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¹⁾

1)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촉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모욕 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도3682 판결>

이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명백하게 불처벌 의사를 밝히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주거지가 확인되고 피해자가 불처벌을 밝히고 있는 만큼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 즉 체포의 필요성을 명백하게 입증하기가 곤란해 보인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폭행·협박 등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할 경우 현행법 체포는 사실상 곤란하다. 가정폭력 범죄의 현장 종결 비율이 높은 이유도 바로 현행 법체계서 기인하는 것으로 실제 가정폭력 신고 처리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행법 체포를 주저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에서 비롯된다.

이처럼 우리는 미국과 같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의무체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제도가 없어 현장 경찰관의 판단으로 현행법 체포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만큼 경찰관 입장에서는 사후 불법성 여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체포를 선호하지 않을뿐더러 국민입장에서는 체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어 공정한 법집행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에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는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를 즉시 체포해야하는 의무체포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의무체포제도 등이 포함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발의²⁾되어 있다.

가정폭력의 현장 종결 관행을 개선하고 ‘가정폭력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기초를 확립하여 보복 범죄를 차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에 대한 미국의 의무체포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필자는 2018년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재직하면서 2018년도 관내의 가정폭력 입건자중 재범자들의 최초 형사 처분을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불기소 인원이 가장 많고 기소 인원이 가장 적어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재범율이 높음을 추정 할 수 있었다.³⁾

2) 남인순 의원(2017.3.8.), 송석준 의원(2019.1.2.) 등

<'18년 울산중부서 가정폭력 재범자들의 최초 형사 처분 내용>

총계	불기소	가정보호사건	기소	재판 中
89	45 (51%)	33 (37%)	9 (10%)	2 (2%)

그러나 의무체포제도는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는 만큼 피체포자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의무체포제도가 원 취지와 같이 가정폭력 재범율을 떨어뜨리는 등 가정폭력 억제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가. 연구의 목적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공론화 되면서 가정폭력에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법집행 현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의무체포를 통해 가정폭력을 억제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의무체포제도에 대해 △피체포자 인권 침해 △가정폭력 신고 감소 △중한 보복폭력 야기 등의 부작용도 제기되는 만큼 의무체포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가정폭력 의무체포제도의 의의와 효과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 관련 법령 제정시 고려해야할 할 사항을 살펴보고 법집행 현장에서 피체포자의 인권 침해 등 의무체포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경찰 매뉴얼 작성에 대한 참고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
- 3) 가정폭력 재범자들의 최초 형사처분을 분석하여 추정한 것이므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가정폭력 초범자의 최초 형사처분 결과에 따른 재범율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연구 내용

첫째, 미국 가정폭력 의무체포제도의 연혁을 검토하여 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변천 과정 등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

둘째, 미국 각 주의 의무체포제도의 종류와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제도가 가장 우리 실정에 적합한지 검토하겠다.

셋째, 의무체포제도와 관련 미국 경찰관서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 매뉴얼을 검토하여 법집행 현장에서 어떠한 과정에 의해 의무체포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실제 법집행 현장에서 의무체포제도를 체험한 경험을 공유하겠다.

넷째, 미국 의무체포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미국 논문을 검토하고자 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

다섯째, 의무체포제도 입법과 경찰 매뉴얼 작성시, 의무체포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해보겠다.

II. 미국 가정폭력 의무체포제도의 의의

1. 의무체포제도의 연혁

가. 과거 ~ 1970년대

미국 역사상 가정폭력은 형법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으로 아내를 징벌하고 징계하기 위하여 아내를 때리는 행위는 공공연하게 인정되었으며 가장의 권리로써 지켜져 왔다. 그러나 19세기 페미니스트 행동주의의 결과 아내를 체벌하기 위한 남편들의 권리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 폭력은 사회에서 묵인되며 지속되어 오다 1960년대 매맞는 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운동(battered women's movement)이 시작되면서 미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국가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⁴⁾

미국경찰의 경우에도 1970년대까지는 가정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체포를 선호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경찰관들이 가정폭력을 개인적 문제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경험상 가정폭력사건의 가해자 체포는 종종 피해자가 소추(처벌)를 거부하여 기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에서 피해자가 체포이외의 다른 수단을 요구하기도 하고, 체포를 하면 그 후속절차로 보고서작성 등 업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밖에도 다른 강력범죄의 검거와 달리 실적평가에서도 가정폭력 가해자의 체포는 낮게 평가되기도 한다.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의무적인 체포가 도입된 시대적 배경은 가정폭력에 대한 대중의 시각 변화가 1970년대 후반부터 일어났기 때문이다. 여성단체에서는 배우자 폭력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여성의 적극적인 보호를 요구하였다. 뉴욕시와 오클랜드에서 여성단체는 경찰서에서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체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여성의 평등한 보호를 규정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다. Bruno v. Codd(1978) 사건⁵⁾을 계기로 뉴욕시경은 중죄 폭력

4)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해외가정폭력방지 법·정책 및 활동(2013년), 9~10쪽.

5) 이 사건에서 경찰은 부인에 대한 남편의 가정폭력 현장에 도착하여 명백한 폭력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조치를 거부하였다. 경찰관들은 피해자인 부인에게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체포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대신에 피해자에게 유일한 구제수단은 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명령(protection order)'을 받는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felonious assault) 사건에 대하여 의무적 체포정책(written policy)을 채택하였고, Scott v. Hart(1979)사건을 계기로 오클랜드 경찰서도 유사한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경찰의 체포재량권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⁶⁾

나. 1980년대 미네아폴리스 가정폭력 실험

1980년 전국경찰서장회의(National Organization of Police Chiefs)에서 경찰이 가정폭력에 대해 중재를 시도하기보다 가해자를 체포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채택하는 등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체포의 중요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사용하는 방법의 효과를 실험한 미네아폴리스 가정폭력 실험연구(Minneapolis Domestic Violence Experiment, 1981년~1982년) 발표(1984년)가 의무체포제도의 기폭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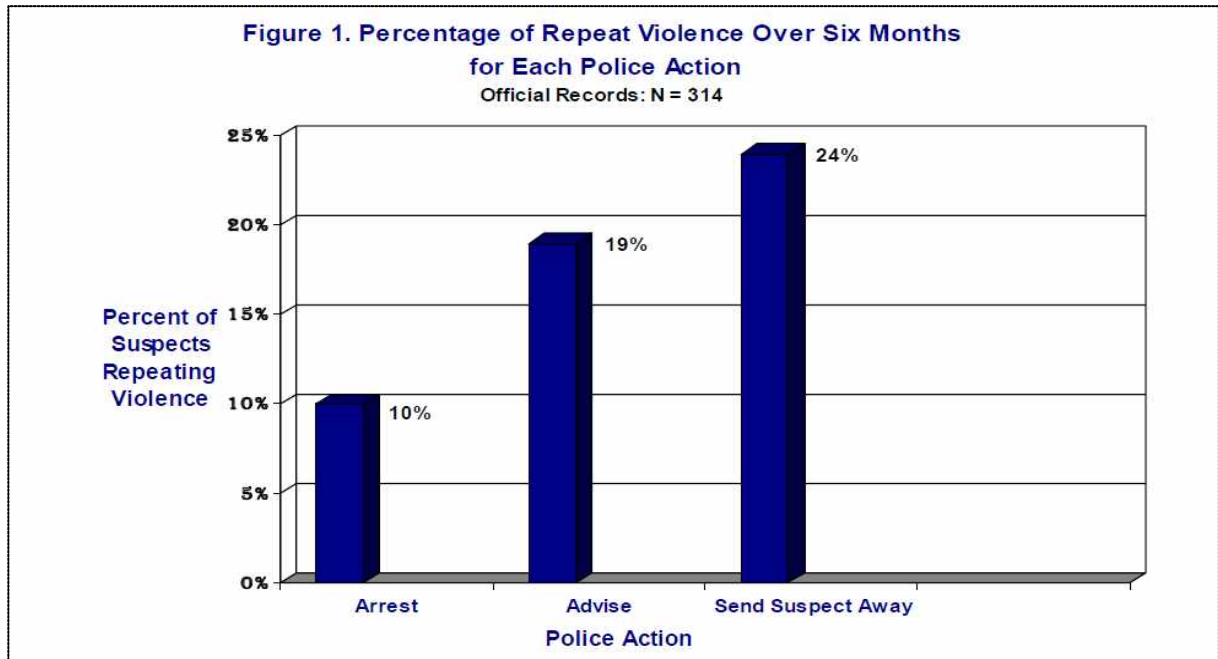
이 실험은 1981-1982년 경찰 재단 연구 책임자인 셔먼과 버크(Lawrence W. Sherman and Richard A. Berk)가 미네아폴리스 경찰국의 자금지원을 통해 시행되었다. 51명의 미네아폴리스 경찰관이 6개월 동안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하면서 체포가능성이 있는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3가지 처리 유형, 즉 체포(arrest)·경고(Advise)·격리(Send Suspect Away)유형으로 1/3씩 무작위로 처리한 후 피해자들과의 인터뷰와 경찰서의 신고 기록을 통하여 가정폭력의 반복여부를 모니터링 하였다.

약 330건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경찰서 신고기록 기준으로 경고(19%)나 격리(24%)보다 체포(10%)되었을 때 재범율이 약50%이상 낮게 나타났다으며 피해자 인터뷰 기준으로도 경고(37%)나 격리(33%)보다 체포(19%)되었을 때 재범율이 약 50%이상 낮게 나타나 체포가 가해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는 결과가 나타났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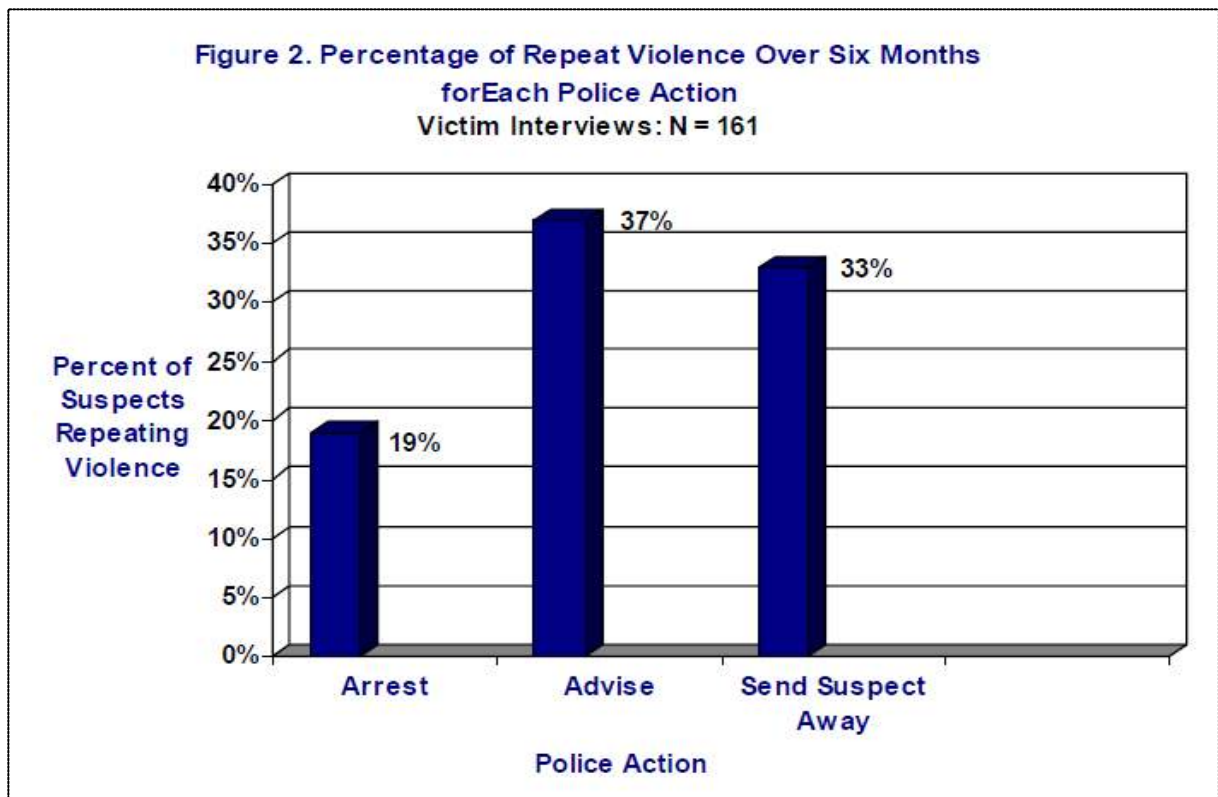
6) 이영돈,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고찰, 경찰학연구 제13권 제2호(2013년), 41~42쪽

7) Sherman, Lawrence W. & Richard A. Berk (April 1984). "The Minneapolis Domestic Violence Experiment"

< 경찰서 신고기록 기준, 경찰관 조치유형에 따른 재범율 >



< 피해자 인터뷰 기준, 경찰관 조치유형에 따른 재범율 >



한편, 미네아폴리스 실험에 대한 비판자들은 1)일부 경찰관이 지시된 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실험의 엄결성(integrity)을 침해하여 사건의 무작위 방식 배정을 손상시켰고 또한 매우 소수의 참가 경찰관들이 다수의 체포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실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2) 후속연구나 반복된 실험이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냈다는 점⁸⁾ 3)6개월의 기간은 가정폭력의 주기적 패턴을 정형화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점⁹⁾ 4) 체포되는 것이 미래의 제재에 대한 범죄자로서의 두려움이 증가했는지 여부가 측정되지 않았다는 점¹⁰⁾ 등을 들어서 체포의 효과가 반드시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실험은 당시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조치 유형에 따른 재범율을 보여주는 유일한 실험이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는 뉴욕 타임즈 (New York Times) 와 텔레비전의 주요 뉴스 보도를 포함하여 뉴스 매체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 많은 미국 경찰관서들이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가정폭력에 대한 강제 체포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¹¹⁾

1984년 법무부는 가정폭력에 관한 미 법무장관 특별조사단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미네아폴리스 연구에 크게 의지하여 경찰당국과 사법기관에 가정폭력을 범죄행위로 인식하도록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으로 경찰에게 가해자 체포를 권장하였다.¹²⁾

8) Samuel Walker/Charles M. Katz, the Police America 8th edition, the McGrawHill Co. 2013, 246면.

9) Fagan, Jeffrey, "가족 폭력의 폐지 : 억지와 설득". 범죄와 정의(1989년)

10) Fagan, Jeffrey, "가정 폭력의 범죄 : 약속과 한계"(1996년)

11) 엘리엇, 델 버트 S. "가족 폭력 범죄의 형사 사법 절차"(1989년), 427-480쪽.

12)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해외가정폭력방지 법·정책 및 활동(2013년), 10쪽.

다. 1994년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및 그 이후

1994년 연방차원에서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 VAWA)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성매매 피해자를 위하여 민사상·형사상 전략을 수립하고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며, 피해자의 안전을 더욱 확대하고 행위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집행부서, 검찰, 법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여성폭력방지법은 조바이든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1994년 9월 13일 빌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하였다. 2000년과 2005년 12월에 미 의회에서 재승인을 받았고, 2013년 3월 7일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효력이 연장되었다.

여성폭력방지법 중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4편 Subtitle B 여성을 위한 안전한 가정(Safe Homes for Women)이다. 제1장에서는 국가가정폭력 핫라인(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을, 제2장에서는 주간의 법집행(Interstate Enforcement)을, 제3장에서는 가정폭력사건에서의 체포정책(Arrest Policies in Domestic Violence Cases)을, 제4장에서는 피해자쉘터 지원(Shelter Grants), 제5장에서는 청소년 교육(Youth Education), 제6장에서는 가정폭력에 관한 지역사회 프로그램(Community Programs on Domestic Violence), 제7장에서는 가정폭력 방지 및 서비스에 관한법개정(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 Act Amendments), 제8장에서는 학대피해자를 위한 비밀유지의무(Confidentiality for Abused Persons), 제9장에서는 데이터구축과 연구지원(Data and Research), 제10장에서는 지방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법집행(Rural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Enforcement)을 규정하고 있다.¹³⁾

이처럼 여성폭력방지법은 미국의 가정폭력 대응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동법 시행된 이후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각 주에서는 의무체포 법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가정 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사회안전망 강화에 관한 연구(2018년), 469~470쪽

2. 미국 주별 의무체포제도

가. 의의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와 관련된 법 규정은 경찰이 체포 여부를 결정하는 데 부여된 권한의 수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의무적(Mandatory) 형태, 우선적(Preferred) 형태, 재량적(Discretionary) 형태가 그것이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의무적 체포(Mandatory Arrest), 우선적 체포(Preferred Arrest), 재량적 체포(Discretionary Arrest)의 형태를 법률로 규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의무적 체포(Mandatory Arrest)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체포하는 경찰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고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도록 규정하는 형태이고 우선적 체포(Preferred Arrest)는 의무에 이르지 않는으나 체포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재량적 체포(Discretionary Arrest)는 체포여부에 대해 경찰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법령에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범죄는 의무적 체포, 경범죄는 재량적 체포로 규정하는 등 사안에 따라서 3가지 체포유형을 혼용하는 경우도 있다.¹⁴⁾

미국에서 의무적 체포정책을 취하는 주는 23개 주¹⁵⁾, 우선적 체포정책을 취하는 주는 6개주¹⁶⁾, 재량적 체포정책을 취하는 주는 22주¹⁷⁾로 파악되고 있다.¹⁸⁾

14) 유지웅,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현장 대응 실효성 제고방안, 치안정책연구소(2017년), 45~46쪽.

15) 알래스카, 아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워싱턴 D.C., 아이오와, 캔사스, 루이지애나, 메인, 미시시피, 미주리, 네바다, 버지니아, 뉴저지, 뉴욕, 오키오, 오레곤,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유타, 워싱턴, 위스콘신 등

16) 아칸소,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몬타나, 노스다코타, 테네시 주 등

17) 알라바마, 델러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켄터키, 미시간, 미네소타, 네브라스카,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버몬트, 뉴햄프셔,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메릴랜드 등

18) Tiffany Dempsey, Mandtory Arrest Law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Situation Research Statement (2012년 2월)

나. 미국 주별 의무체포제도의 종류와 내용

본 항목에서는 ‘가정폭력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현장 대응 실효성 제고방안’(유지웅, 치안정책연구소, 2017년, 46~62쪽)에서 소개된 주별 의무체포제도의 종류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재작성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의무적 체포

주	내용
알래스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은 지난 12시간 이내에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가해자를 체포해야 한다. ▶ 경찰관은 같은 사건으로 한 사람 이상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한 경우, 경찰관은 누가 주도적인 물리적 가해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각사람의 행동을 평가해야 하고, 어느 한 사람이 주도적인 물리적 가해자인 것을 판단한 경우, 다른 사람은 체포할 필요가 없다
아리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은 가정폭력이 일어났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체포하고자 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범죄의 경중이나 경찰관의 직접 목격 여부에 상관없이 영장 없이도 그 사람을 체포해야 한다.
콜로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은 가정폭력을 포함하는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체포해야 한다

주	내용
워싱턴 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은 어떤 사람이 물리적 고통이나 질병을 포함하여 신체적 부상을 초래한 가정 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 그 범죄를 목격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체포해야 한다
아이오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은 수사결과 가정 학대가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신체적 부상을 동반하지 않는 가정학대가 일어났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가해자 체포는 경찰의 재량권에 속하나, 신체적 부상을 동반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가할 의도를 가진 경우, 혹은 위험한 무기를 드러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체포한다.
캔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은 가정폭력을 포함한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 지체 없이 그 사람을 체포해야 한다.
루이지애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은 가족구성원이나 데이트 상대가 학대를 당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학대를 막기위한 모든 합리적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합리적 수단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경찰관이 범죄를 목격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중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학대 가해자를 체포한다. (2) 경찰관이 범죄를 목격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학대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경범죄가 저질러진 경우, 가해자를 체포한다.

주	내용
미시시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은 어떤 사람이 지난 24시간 이내에 고의로 가정 폭력 경범죄 행위를 저질렀거나 일방적인 보호명령, 심리 후의 보호명령, 법원이 승인한 보호명령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에는 그 사람을 체포해야 한다.
미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은 어느 일방이 가족이나 구성원을 상대로 가정폭력에 이르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 경찰관은 그 범죄가 체포하는 경찰관의 면전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자 측을 체포할 수 있다.
뉴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은 가정폭력이 발생했고 피해자에게 부상의 흔적이 있거나 무기가 사용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가해자를 체포해야 한다.
뉴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경찰관은 어떤 사람이 같은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중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체포해야 한다.

주	내용
오래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은 중죄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신체적 부상을 수반한 폭행이 발생했거나 당장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죽음의 두려움을 주는 행동을 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체포해야 한다
워싱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은 16세 이상의 어떤 사람이 지난 4시간 이내에 가족이나 구성원에게 폭행을 범하였고 경찰관이 보기에 (1) 중죄에 해당하는 폭행 (2) 피해자에게 신체적 부상을 남기는 폭행 (3) 다른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당장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죽음의 두려움을 야기하는 신체적 행동이 의도적으로 일어났다고 믿는 경우, 그 사람을 체포해야 한다.

(2) 우선적 체포

주	내용
아칸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은 가정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그 사람이 지난 4시간 내에 그러한 행위들을 범했거나, 지난 12시간 이내에 신체적 부상을 포함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범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직접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메사추세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은 구타나 폭행, 학대를 포함하는 경범죄나 중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경찰관이 직접 본 경우, 우선적인 체포로 대응해야 한다. 가해자가 퇴거명령, 제한명령, 접촉금지명령을 어겼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는 의무적 체포대상이다

(3) 재량적 체포

주	내용
알리바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에 가정폭력이 포함되어 있고 체포가 이뤄질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u>범죄의 중죄 여부에 상관없이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다.</u> ▶ 경찰관이 둘 혹은 그 이상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거나 쌍방이 모두 부상이 있는 경우, 경찰관은 누가 주도적인 공격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각각의 불만을 평가해야 한다. <u>경찰관은 한 사람이 주도적인 신체 공격자라는 것을 판단하였다면, 가정폭력에 연루된 다른 사람은 체포할 필요가 없다.</u>
플로리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은 어떤 사람이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행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조지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응할 때, 피해자의 특별한 동의나 피해자만의 요청, 혹은 서로의 관계에 대한 고려에 기초해서 어떤 사람을 체포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하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은 어떤 사람이 가족 구성원을 물리적으로 학대하고 있거나 학대를 가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일리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은 어떤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주	내용
인디애나	▶ 경찰관은 가정 내 구타행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켄터키	▶ 경찰관은 어떤 사람이 고의로 가족구성원에게 신체적 해를 가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 영장 없이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미시간	▶ 경찰관은 (1) 가정폭력(domestic assault)이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는 경우, (2) 가해자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있거나,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거나, 피해자와 연인관계이(었)거나, 피해자의 (전)배우자인 경우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체포할 수 있다.
미네소타	▶ 경찰관은 지난 24시간 이내에 그 사람이 가정학대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주거지를 포함해서 어디에서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펜실베이니아	▶ 경찰관은 어떤 사람이 단순한 폭행, 가중처벌이 가능한 폭행, 다른 사람을 부주의하게 위협에 빠트리거나, 가족이나 구성원을 상대로 스토킹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3. 미국 경찰의 의무체포제도 집행 매뉴얼

미국에서는 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주·카운티·시 단위의 경찰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 각 경찰관서는 별개의 법령과 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다. 따라서 미국의 모든 주·카운티·시 경찰의 매뉴얼을 살펴보고 검토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량적 체포를 적용하는 주, 의무적 체포를 적용하는 주, 우선적 체포를 적용하는 주에 속하는 도시의 경찰국 정책 매뉴얼을 각각 살펴보고 의무체포제도의 종류에 따라 집행 매뉴얼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도 병행해서 살펴보겠다. 또한 필자가 미국 인디애나주 티피카누 카운티 경찰과 함께 합동 순찰(Ride Along)을 하면서 가정폭력 사건을 실제 처리하는 경험도 소개해 보겠다.

가. 웨스트 라피엣 경찰국 정책 매뉴얼¹⁹⁾

웨스트 라피엣은 재량적 체포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인디애나주의 티피카누 군에 있는 도시로 인디애나주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이다(2017년 기준 46,300명), 가정폭력 매뉴얼은 'Chapter 3, 310-Domestic or Family Violence'에 소개 되어 있다. 관련 내용이 방대한 만큼 체포와 관련된 내용만 우선 살펴보겠다.

(1) 체포를 위한 표준(STANDARDS FOR ARRESTS)

가정폭력 신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은 다음을 고려해야만 하다.

- (a) 가정폭력과 관련된 범죄를 조사하는 경찰관은 감독자가 예외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합법적인 범위에서 피의자를 체포해야 한다.
- (b) 폭행으로 체포된 사람 또는 무력의 사용을 시도하려고 한 사람 또는 현재 또는 이전 배우자·가족·보호자·동거인에게 위험한 무기의 사용으로 협박한 사람은 비록 보석이 제공되더라도 적어도 8시간동안은 감금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9) West Lafayette Police Department Policy Menua(2017년) <https://www.westlafayette.in.gov/egov/documents/>

- (c) 경찰관은 비록 가해행위가 중죄 범위까지 이르지 않았거나 또는 경찰관의 눈앞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가해행위가 발생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으면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다.

- ▶ 가정 폭력 (Domestic battery²⁰)
- ▶ 범죄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 (Interference with reporting of a crime)
- ▶ 가정폭력을 포함한 범죄의 신고조사를 막는 행위(Preventing the reporting of a crime involving domestic or family violence)

(2) 상당한 이유의 판단 요소(FACTORS SUPPORTING PROBABLE CAUSE)

다음의 항목이 경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에 대한 영장없는 체포의 상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요소이지만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a) 피해자에게 눈에 보이는 부상 또는 손상의 징후
- (b) 위협한 물건 또는 무기의 사용
- (c) 가해자가 이미 공격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경찰 신고 이력
- (d) 경찰관이 들었거나 피해자로부터 건네들은 어떠한 협박
- (e) 공격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현장 증거(벽에 던져진 휴대폰, 부러진 가구, 부러진 문 등)
- (f) 목격자(이웃, 아이들)의 진술

20) battery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폭력 외에도 언어 폭력, 경미한 폭력 등 violence 보다 넓은 개념의 폭력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g) 다음과 같이 경찰관에게 폭력이 재발 할 것이라고 믿게 하는 요인

- ▶ 가해자에게 체포된 과거 이력이 있거나 또는 가정폭력을 포함한 경찰 신고가 있었다.
- ▶ 가해자가 “접촉 금지”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있다.
- ▶ 가해자가 이전에 유효한 임시 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 ▶ 가해자가 이전에 다른 폭력적인 행동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체포 그리고 폭력 또는 가중 폭력에 대한 유죄판결)

(h) 가해자가 풀려날 경우 보복 폭력 또는 가중 폭력을 두려워 하는 피해자의 진술.

만일 가해자가 현장을 이미 이탈한 경우, 경찰관은 위에 열거된 항목 외에도 다음의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 ▶ 인근 지역의 수색
- ▶ 피해자와 목격자로 부터 가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관련된 정보 획득
- ▶ 가해자를 24시간 내에 발견하고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경범죄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24시간이 지난후에는 영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중죄의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
- ▶ 만일 가해자가 24시간 안에 체포되면 보석금을 받기 전에 12시간 동안 수감되어 있을 것임을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언제 석방되는지를 알 수 있기 위해 교도소에 연락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3) 피의자(가해자)가 체포된 경우

만일 피의자가 체포된다면, 경찰관은 아래와 같이 해야한다.

- (a)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계속해서 구금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을 알려야 한다.
- (b) 피의자의 석방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교도소 직원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 (c) 피의자가 석방될때 어떤 유형의 법원 명령이 유효한 것인지를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4) 피의자(가해자)가 체포되지 않은 경우

만일 피의자가 체포되지 않는다면, 경찰관은 아래와 같이 해야한다.

- (a)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되 제한되지 않는 모든 사항들을 조언해야 한다.

- ▶ 당사자들의 자발적 분리
- ▶ 적절한 해결 방안 소개(상담사, 친구, 친척, 쉼터, 피해자 증인지원)

- (b) 신고 처리 보고서를 작성한다.

나. 컴벌랜드 경찰국 정책 매뉴얼²¹⁾

컴벌랜드는 재량적 체포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메릴랜드주의 도시이다(2017년 기준 19,300명), 가정폭력 매뉴얼은 '42.2 CRIMINAL INVESTIGATION OPERATIONS'에 기재되어 있으며 C장의 체포 부분을 소개하겠다.

- (1) 경찰관들은 가정폭력법 하에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와 법적인 권한이 존재할 때 체포할 수 있다.
- (2) 여기서 말하는 체포를 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이다.

- ▶ 가해자가 동거인 또는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때린 경우.
- ▶ 경찰관이 대응하고 있는 신고가 48시간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 신체적 외상의 증거가 있는 경우. 예컨대 신체 외관의 절단, 입술, 코 또는 얼굴에서 핏자국, 뚜렷한 멍자국, 때리거나 부딪힌 자국, 폭력적 접촉을 보여주는 자국(팔 또는 다리에 있는 손가락 자국), 헝클어진 머리 등
- ▶ 체포에 대한 마지막 요건은 가해자가 체포되지 않은 경우, 가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상 시키거나 증거를 무단 변경하거나 파괴 할 수 있는 경우로 위 3개 요소가 존재하면 이 요건은 일반적으로 충족됨.

- (3) 추가로 경찰관은 가해자가 범위반당시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가해자를 영장없이 체포하여 구금할 수 있다.

21) cumberland policy manual (2016년) <http://www.ci.cumberland.md.us/DocumentCenter/View/1655/2016-Policy-and-Procedures?bidId=>

- (4) 경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아닌 주정부에 의해서 공권력이 집행되고 있음을 강조해야만 한다.
- (5) 지역법원에 의해 가정폭력 사건의 영장이 발행되었을 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최대한 빨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 (6) 가정폭력을 수사하면서 양쪽 모두가 피해자라고 주장할 때, 경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 어느 한쪽이 방어행위로 행동하였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 ▶ 주요 공격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 ▶ 관련된 당사자의 폭력 전과 기록을 고려해야 한다.
- ▶ 경찰관은 가능하다면 양쪽 모두를 체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다. 브레머튼 경찰국 정책 매뉴얼²²⁾

브레머튼은 의무적 체포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워싱턴 주 키트삽 군에 있는 도시이며 군에서 인구가 제일 많다.(2017년 기준, 41,000명) 가정폭력에 관한 매뉴얼은 'Chapter 3, 320-Domestic Violence'에 소개 되어 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관련 내용이 방대한 만큼 체포와 관련 된 내용만 우선 살펴보겠다.

(1) 체포를 위한 표준 (STANDARDS FOR ARRESTS)

가정폭력 신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은 다음을 고려해야만 한다.

- (a) 가정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경찰관의 주요 임무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법률을 위반한 가해자에게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다.
- (b) 경찰관이 가정폭력 신고에 대응하고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을 때, 경찰관은 법령의 기준에 따라 체포해야 한다.
- (c) 경찰관은 유효한 법원 명령이 존재하고 명령을 따를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확인될 때 경찰관은 체포해야만 한다.

(2) 보고서와 기록 (REPORTS AND RECORDS)

- (a) 가정폭력 신고를 처리한 경찰관은 사건처분을 포함한 완전한 사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이 보고서는 총기들과 숨겨진 권총 면허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하고 총기관련 정보의 존재에 대해 보고서를 검토하는 경찰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적절하게 코딩되어야 한다.

22) Bremerton Police Department Policy Manual(2019년) <https://www.bremertonwa.gov/DocumentCenter/View/Bremerton-Police>

- (b) 모든 보고서들은 적절한 범죄 분류에 따라 문서화 되어야 하며 범죄 보고서 형식의 범죄상자 유형에서 ‘가정폭력’을 명시해야만 한다.
- (c)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사건에 대해 적극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반 조사감독관은 모든 가정폭력 보고서를 사건발생 10일 내에 검찰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 (d) 경찰 지원 관리자는 가정폭력 사건의 정확한 기록이 유지되고 주법에 따라 경찰 서장과 워싱턴 보안관 협회에 제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e) 경찰지원관리자는 보호 명령 이후 포기된 무기류, 위험한 무기 또는 권총면허의 원본 영수증이 보호 명령 24시간 내에 법원에 제출되고 가능하다면 영수증의 사본을 보관하는 것을 확인해야한다.

라. 솔트레이크 시티 경찰국 정책 매뉴얼

솔트레이크 시티는 의무적 체포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유타 주의 주도로 약 11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가정폭력에 관한 매뉴얼은 'Chapter 3, 309-Domestic Violence'에 소개 되어 있으며 앞서와 마찬가지로 체포와 관련 내용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

(1) 체포를 위한 표준 (STANDARDS FOR ARRESTS)

- (a) 가정폭력을 처리하는 경찰관은 폭력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정폭력 가해자를 체포하거나 소환해야만 한다. 경찰관 앞에서 범죄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 (b) 경찰관은 피의자가 법원 명령 또는 석방 동의서 조건을 위반했다고 생각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피의자를 체포해야하며 그 명령이 진행중임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경찰관 앞에서 범죄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 (c)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지속적인 폭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가해자가 최근 가정폭력에서 위험한 무기를 사용하였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는 증거가 있다면, 경찰관은 소환이라는 선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때 폭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알려주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 가정폭력과 관련된 체포 또는 소환의 과거 기록
- ▶ 피혐의자가 법원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피혐의자가 다른 폭력적 행동의 과거 기록을 가진 경우(예컨대 폭력에 대한 체포 또는 유죄 판결)
- ▶ 피해자에게 과거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 ▶ 피혐의자가 풀려날 경우 미래에 폭력이 반복될 것 같다는 공포를 표현하는 피해자의 진술
- ▶ 피해자가 계속된 폭력적 학대에 종속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가 있는 경우

(d)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경찰관은 이중체포를 지양해야만 한다. 만약 2명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들로부터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는 경우, 경찰관은 각각의 신고자들을 분리하여 누가 주된 공격자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만일 경찰관이 한명이 지배적인 물리적 가해자였다는 것을 판단하면 경찰관은 가정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다른 사람 모두를 체포할 필요는 없다. 주된 가해자를 결정할 때, 경찰관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 가정폭력과 관련된 이전의 문제제기 내용들.
- ▶ 각 개인에게 발생한 부상의 상대적 심각도.
- ▶ 각 당사자에 대한 향후 부상 가능성.
- ▶ 당사자 중 하나가 자기 방위로 행동했는지 여부.

(e) 경찰관은 공권력의 개입에 대한 가정폭력 당사자의 요청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체포 가능성에 대해 제시하거나 표시하거나 또는 협박해서는 안 된다.

(f) 체포를 하지 않은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와 증거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공지해야 한다.

(g) 신고인(고소인)이 법원명령 존재를 알려줄 때, 경찰관은 유효한 법원 명령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경찰관은 그 명령이 주 전체의 영장 시스템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h) 만일 피혐의자가 현장에 더 이상 없는 경우, 경찰관은 후속 조사를 위해 사건을 문서화해야 한다.

- (i) 구금 체포가 되면, 체포한 경찰관은 피체포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슬트레이크시티 교도소의 석방 동의서 사본을 제공해야만 한다. 석방 동의서 사본은 슬트레이크 시티 경찰서 기록센터에도 보내질 것이다.
- (j) 만일 구금 체포 되신 소환이 될 경우, 경찰관은 피체포자에게 석방동의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2) 보고서와 기록 (REPORTS AND RECORDS)

- (a) 모든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 경찰관의 사건처리 결과.
- ▶ 가정폭력에 대한 적절한 범죄 분류.
- ▶ 관련된 각각의 당사자들의 결혼여부.
- ▶ 피해자와 피혐의자의 관계.
- ▶ 체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 만일 체포가 되지 않은 경우, 체포를 하지 않은 상세한 이유를 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것.
- ▶ 만일 양쪽 모두를 체포하였다면, 양쪽을 체포한 상세한 이유를 보고서에 기재할 것.

- (b)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보고서의 사건 번호를 제공해야만 한다. 사건 번호는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서류에 적절한 공간에 위치 해야한다. 만일 사건 번호가 즉시 발생하지 않는다면,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나중에 어떻게 사건번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만 한다.

- (c) 보고서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d) 기록부서에서는 사건보고서의 사본을 가정폭력 사건 발생후 5일 이내에 적절한 기소 변호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 (e) 가정폭력 보고서를 만드는 경찰관은 피해자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해 석방제한을 부과하길 원하는지, 피의자가 피해자와 개인적 접촉을 가지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는지,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일시적인 다른 가옥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한다.

마. 패서디아 시티 경찰국 정책 매뉴얼²³⁾(선택적 체포정책)

패서디아는 선택적 체포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도시로 인구는 137,122명이다. 가정폭력에 관한 매뉴얼은 'Chapter 3, 320-Domestic Violence'에 소개 되어 있으며 앞서와 마찬가지로 체포와 관련 내용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

(1) 체포를 위한 표준 (STANDARDS FOR ARRESTS)

가정폭력 신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은 다음을 고려해야만 하다.

- (a) 체포는 중죄 또는 경죄의 가정폭력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루어져야만 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성인을 체포하지 않는 결정은 상급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경찰관은 경죄의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발생하자마자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b) 체포를 할 수 없는 가정폭력 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보안적 체포(private person's arrest)를 하는 권리를 알려줘야 한다. 통지는 피혐의자가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에게 체포가 안전하게 수행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포함한다. 경찰관은 피해자로 하여금 법적인 보안적 체포를 하는 것을 그만두게 해서는 안된다. 경찰관은 보안 체포의 처분에 관련된 선택사항에 대하여 보안체포정책(Private Person's Arrests Policy)에 관한 조항을 언급해야만 한다.
- (c) 경찰관은 다음 폭력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풀어주거나 소환해서는 안 된다.

23) Pasadena Police Department Policy Manual(2019년) 151~157쪽
<https://www.wvc-ut.gov/DocumentCenter/View/11639/WVCPD-Policy-Manual-Revised-03012019?bidId=>

- ▶ 배우자 동거인에 대한 폭력
- ▶ 배우자, 동거인, 약혼자에 대한 신체적 상처
- ▶ 보호명령 위반(폭력, 협박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피혐의자가 보호되는 당사자의 직장 또는 주거지에 간 경우)
- ▶ 스토킹
- ▶ 다른 심각한 폭력적 중죄

(d) 상호 보호명령 위반을 포함한 가정폭력사건 처리에 있어서 경찰관은 상호 체포를 지양해야한다. 경찰관은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도 지배적인 공격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만 한다. 지배적인 가해자는 첫 번째 공격을 한 자라기 보다는 가장 심각하게 공격 한 것으로 결정되는 자이다. 지배적 가해자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경찰관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 가정폭력 피해자를 계속되는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의 목적.
- ▶ 신체적 부상의 두려움을 만드는 협박.
- ▶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에 가정폭력 이력.
- ▶ 자기 방어 차원에서 행동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e) 법원명령의 위반이 발생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범죄가 경찰관의 목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체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체포 후 경찰은 피해자가 법원 명령의 사본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법원 명령의 사본을 확인해야 한다.

(2) 보고서와 기록 (REPORTS AND RECORDS)

- (a) 모든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보고서가 적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모든 보고서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필요한 정보와 표기를 포함한 적절한 형식으로 문서화 되어야 한다.
- (b)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보고서의 사건번호를 제공해야만 한다. 사건 번호는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서류에 적절한 공간에 위치 해야한다. 만일 사건 번호가 즉시 발생하지 않는다면,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나중에 어떻게 사건번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만 한다.
- (c) 가정폭력 사건에서 무기류 또는 다른 위험한 무기를 압수한 경찰관은 그러한 무기들에 대한 개인적 소유권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행하고 어디에서 무기들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가능한 시간과 함께 알려줘야 한다.

4. 소결

미국의 의무체포제도는 여성 권리의 신장과 함께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가정폭력을 줄이고 가정폭력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당시 가정폭력과 관련된 유일한 연구였던 1984년 미네아폴리스 연구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방안중 ‘체포가 재범 억제에 효과적이다’라는 수치상의 결과가 나타나면서 실험에 대한 비판이 있음에도 의무체포제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1994년 연방차원에서 여성폭력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각주에서는 의무체포제도를 법제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무체포제도는 경찰이 체포 여부를 결정하는 데 부여된 권한의 수준에 따라 의무적 체포(Mandatory Arrest, 23개주), 우선적 체포(Preferred Arrest, 6개주), 재량적 체포(Discretionary Arrest, 22개주) 형태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의무체포제도의 법령이 주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경죄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체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형사법령에서 체포가 가능한 3가지 요건²⁴⁾(① 범죄가 체포를 행하는 경찰관의 목전에서 행해졌을 것 ②영장이 발부 되어 있을 것 ③피의자가 중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의 예외를 입법화하여 가정폭력 사건에서 체포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보여진다.

의무체포제도의 종류에 따른 각 도시 경찰국의 정책 매뉴얼을 살펴보면²⁵⁾ 재량적 체포를 채택하고 있는 도시의 경찰국에서는 체포에 대해 경찰의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경죄에 대한 체포를 위해서는 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의 존재를 요구하며 상당한 이유의 예시를 적시한다. 다만 이때에도 현장 경찰관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여 적시된 예시에 경찰관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24) 김재민,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미국 미시간 주경찰의 현장 대응, 경찰학연구 2005 제8호, 제188쪽

25) 후술하는 내용은 미국의 모든 도시의 경찰 정책 매뉴얼을 검토한 것은 아니므로 도시별로 다소 상이한 내용이 존재 할 수 있다.

전적으로 경찰관에게 부여한다.

의무적 체포를 채택하고 있는 도시의 경찰국 또한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을 때 피혐의자를 체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재량적 체포를 채택한 도시와는 달리 부연적 설명이 없다. 그리고 사건처리 후 보고서 작성과 기록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편이다.

선택적 체포를 채택하고 있는 도시의 경찰국 역시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을 때 체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반드시 체포해야 되는 폭력의 종류를 명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의무적 체포제도의 종류에 따라 현장 경찰관의 법집행 매뉴얼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의무체포제도가 경죄에 대해서도 체포를 가능하게 입법화 하였음에도 체포를 위해서는 의무체포제도의 종류와 관계없이 상당한 이유의 존재(probable cause)가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특히 체포에 있어 재량을 폭 넓게 인정하는 재량적 체포에서는 상당한 이유의 존재의 예시를 열거하는 등 의무체포제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필자는 재량적 체포권을 채택한 인디애나주 티피카누카운티 셰리프(Indiana Tippecanoe County Sheriff)의 경찰(Ben Beutler, Detective)과 함께 합동 순찰(Ride alongs)을 하면서 가정폭력 신고 처리 과정에 참여하였다. 당시 접수된 가정폭력은 형제간의 폭력으로 형이 동생을 폭행한 사건이었다. 경찰은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시킨후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로부터 폭력의 경과를 청취하고 가해자에게 폭력의 경위를 상세히 청취하였다.

그 후 출동 경찰관들 중 담당 경찰관과 선임경찰관이 사건 처리방향에 대해 의논을 한 후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도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²⁶⁾ 체포 사유는 비록 폭력의 정도는 경미하나 과거

26) 인디애나주 티피카누카운티 셰리프 경찰관은 평소에는 1인 순찰을 하나 가정폭력 등 중한 신고가 있을 경우 합동으로 신고 현장에 임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때렸다는 피해자와 가족의 진술이 있고 가해자 또한 이를 인정하는 만큼 폭력 재발 우려가 있어 체포한다는 것이었다.

가해자를 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시킨후 필자는 합동순찰 파트너 경찰관에게 가정폭력 사건에서 체포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다. 해당 경찰관은 체포 여부에 대한 모든 판단은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전적인 재량(Discretion)이라고 하며 상습성 등에 대한 판단도 비록 가정폭력 신고가 단 1회 있다 할지라도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등 현장 상황을 조사하여 상습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신고이력 등에 구속되는 것은 없다고 한다.

즉 매뉴얼 상의 참고 자료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에 해당할 뿐이며 참고 자료가 모든 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참고자료가 신고 현장 경찰관의 판단을 제한하거나 구속하는 것은 없다고 하였다. 경죄에 대한 체포도 가능하게 하면서도 현장 상황에 맞게 체포 여부를 탄력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게 한 것이다.

미국은 지방 자치의 역사가 깊고 각 주는 문화 등에서 차이가 큰 만큼 범죄신고 현장에서 현장 상황을 가장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경찰이므로 범죄신고 현장에서의 경찰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치안권이 발전한 것으로 추정한다. 가정폭력의 의무체포제도 또한 이러한 문화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경찰 체계로 법집행 등에서의 일관성 및 통일성이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인 만큼 우리나라에서 의무체포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가정폭력 상황별 다양성을 인정하여 경찰에게 체포의 재량은 인정하되 피체포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보다 일관된 법집행을 위해 체포를 위한 조건인 상당한 이유의 존재(probable cause)를 명시하고 상당한 이유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보다 상세히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Ⅲ. 미국 가정폭력 의무체포제도의 효과

1. 의 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체포가 가정폭력 재범을 낮춘다는 1984년 미네아폴리스 시험 결과 발표 이후 의무체포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 하였다.

의무체포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체포를 가정폭력 범죄에 있어서 의무화 하여 ‘가정폭력은 반드시 체포된다’는 인식을 확립시켜 가정폭력 범죄의 억지력을 강화시키는데 방점을 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체포된다’는 두려움의 효과를 감안할 때 가정폭력 범죄의 억지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에는 일응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미네아폴리스 실험 이후 의무체포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거나 후속 연구 또는 반복 실험이 전혀 없어 의무체포제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의무체포제도의 비판자들은 미네아폴리스 실험을 비판하며 의무체포제도는 △피체포자의 인권 침해 △가정폭력 신고 감소 △보다 중한 보복 폭력 발생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면서 의무체포제도가 가정폭력의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주장 한다.

가정폭력의 해결책으로 의무체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무체포제도로 야기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의무체포제도를 시행중인 미국에서 발생되고 주장되는 문제점과 그 논거를 살펴보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장에서는 미국 의무체포제도 정책의 문제점과 논거와 관련된 논문²⁷⁾을 살펴보고 이것이 주는 시사점을 검토해보겠다.

27) Tiffany Dempsey, Mandtory Arrest Law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Situation Research Statement (2012년 2월)

2. 의무체포제도의 효과(Effects of Mandatory Arrest)

의무체포법이 채택되어 시행될 때에는 미국내에서 법률 변화의 필요에 의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의무체포법이라는 해결책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에게 해로운 문제를 야기하면서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야기 하였다. 부정적 결과에는 1)가정폭력으로 인해 체포되는 여성의 발생, 2)폭력에 직면하는 피해수준의 증가, 2)경찰 신고의 감소 등이 포함된다.

가. 체포되는 여성

가정폭력 신고에 대응시 경찰관에게 체포를 요구하는 의무체포법내에서는 경찰관은 신고 현장에 접근하고 난후 분쟁의 어느 당사자가 가해자임을 분명히 판단해야만 한다.

하지만 경찰관이 체포를 위해 폭력 행위를 반드시 목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관은 누가 실제 가해자인지를 모르게 된다. 이러한 결론은 경찰관들에게 분쟁과 관련된 양쪽 당사자 모두를 체포하고 구금상태로 만들게 된다.

1998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시행된 한 연구에서 의무체포법의 사용으로 이전보다 2배보다 적게 체포되는 남성에 비해 여성은 3배 더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쌍방 체포 때문에 체포되는 피해자들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많은 주들은 경찰관들에게 가정폭력 현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각 주들은 분쟁현장에서 어느 당사자가 가해자인지를 결정하고 판단해야만 하는 주요 가해자 기준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경찰관에게 의무체포법이 시행될 때 사라졌던 재량권의 일부를 돌려놓는 듯 하지만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경찰관들은 단지 폭력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미래에 발생할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만 있으면 되고 실제 현장을 목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체포를 위해서), 당사자들 중

누가 주요 가해자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남자와 여자 양쪽 모두 분쟁에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고 양쪽 모두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교육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많은 경찰관이 가정 분쟁중 어느 쪽이 자기 방어이고 어느 쪽이 가해자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은 경찰관이 부정확하게 가정폭력 피해자인 여성 체포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실질적 가해자를 자유롭게 놔두도록 하였다. 여성 체포수의 증가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여성에 대한 체포는 종종 학대당하는 여성이 받아야 할 권리의 상실을 의미했다. 예컨대, 한번 체포된 여성은 자신의 피해자 권리를 잃을 수 있게 되므로 쉼터나 다른 보호 프로그램에의 접근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피해자는 직장을 잃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체포되고 주 가해자라는 명예를 지게되면 아이의 양육권까지 잃게 될 수 있다. 체포되면 여성들은 사법 정의 시스템과 그들의 학대자들 양쪽에 의해 재범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

나. 폭력의 증대(Escalation of Violence)

의무 체포법은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에서 폭력과 학대의 증대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해자를 체포하는 것은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대한 더 많은 폭력을 야기 할 수 있다.

가해자가 석방되었을 때 체포되었다는 사실은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석방되었을 때 가해자가 그가 체포되어 화가 날 것이고 나아가 상대방에 대해 좌절감을 일으킬 수 있다.

의무체포제도는 피해자를 돕고 보호할 것으로 추정되었음에도, 종종 피해자로 하여금 이처럼 가해자로부터의 증대한 폭력의 대가를 부담하게 한다. 가정폭력은 재발하는 사건이고 가해자는 석방되는 즉시 피해자의 당사자로서 매일 접촉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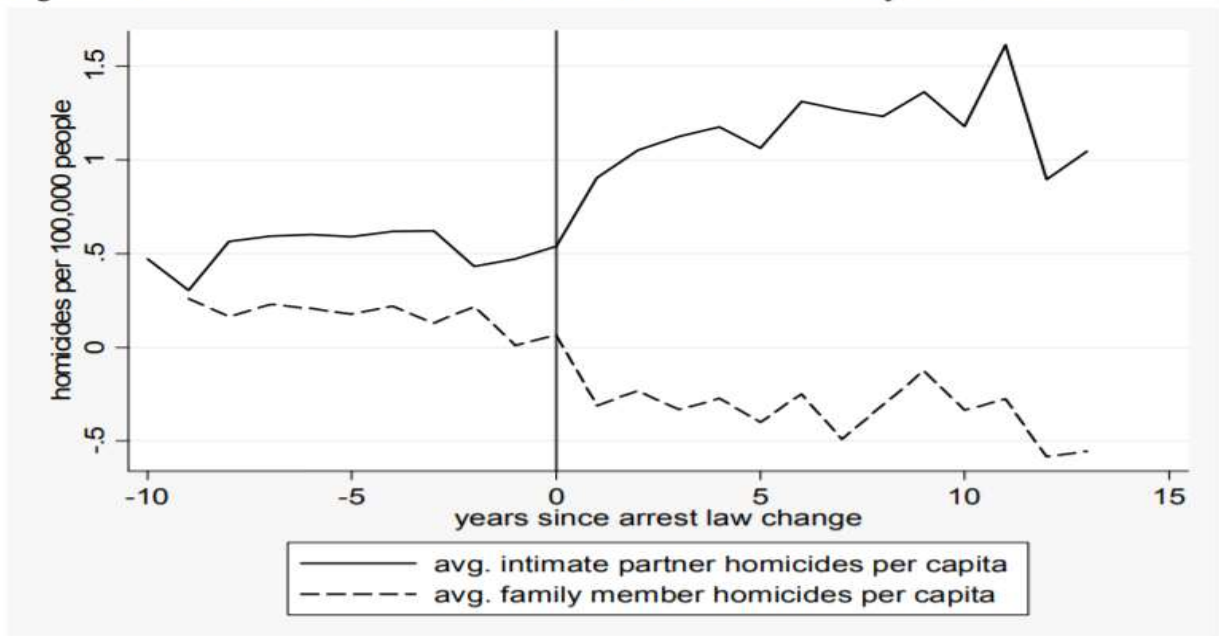
이러한 접촉은 모니터링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해자로 하여금 한번 더 피해자를 학대하거나 협박 할 것을 허용하게 된다. 체포 후 두사람의 접촉 때문에 학대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폭력적이고 학대 성향을 가진 남자에게는 형벌과 체포라는 협박은 억제 효과를 가지는 것 같지 않다. 이것은 저소득 계층, 즉 체포라는 결과가 자신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 실업자에 해당하는 가해자들에게는 특히 잘 적용된다.

Radha Iyengar는 1976 년부터 2003 년까지 FBI 보충 살인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친밀한 파트너간의 살인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Ivengar는 의무체포법이 있는 주와 의무체포법이 없는 주에서 각각 친밀한 파트너간의 살인 비율이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의무체포법 적용 주, 친밀한 파트너와 가족관계의 살인 비율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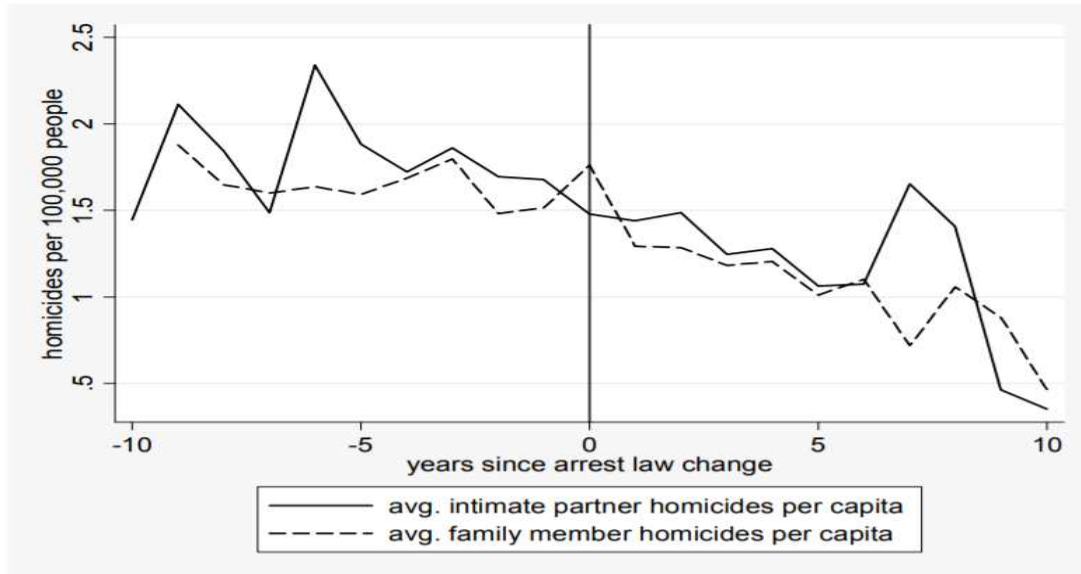
Figure 1. Intimate Partner and Familial Homicide Rates in Mandatory Arrest Law States



28) Means based on author's own calculations using Supplementary Homicide Reports 1976-2003/ 친밀한 파트너 간의 살인은 남편, 아내, 전남편, 전 아내, 법률적 부부를 모두 포함한다./ 의무체포제도가 있는 주는 경찰관이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이 신고되었을 때 영장없는 체포 여부에 대해 재량이 없는 주로 정의한다.

<의무체포법 비 적용 주, 친밀한 파트너와 가족관계의 살인 비율>

Figure 2. Intimate Partner and Familial Homicide Rates in Recommended Arrest Law States



연구결과,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밀한 파트너간의 살인 범죄 건수에서 의무 체포법이 없는 주는 감소한 반면 의무체포법이 있는 주는 오히려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가정폭력에서 의무체포법이 친밀한 관계인들사이에서 살인과 같은 중한 범죄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암시한다.²⁹⁾ (Figure 1에서 가족 구성원간 살인 비율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아동에 대한 살인 비율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9) Iyengar, Radha. "Does the Certainty of Arrest Reduce Domestic Violence: Evidence from Mandatory and Recommended Arrest Law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s.(2007): n. page. Web. 30 Jan. 2012. <http://www.nber.org/papers/w13186.pdf?new_window=1>.

다. 신고의 감소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중, 스토킹은 모든 범죄의 50%, 강간은 모든 범죄의 20%, 육체적 폭력은 25%만 매년 경찰에 신고가 된다. 가정폭력은 가장 신고되지 않는 범죄중 하나이다.

의무체포법이 통과되고 현장에서 시행된 이후,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누군가가 분명히 체포된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깨달음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전에 하였던 것 보다 훨씬 적게 경찰에게 접촉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학대의 심리적·정신적 효과 때문에,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의 피해자들은 종종 경찰이 개입하였을 때 가해자가 체포되거나 감옥에 보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들은 만일 가해자들이 체포된후 단지 짧은시간만 구금상태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경찰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보다 가해자들이 더 학대적이고 심지어 더 가혹하게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몇몇 경우에는 피해자들은 의무체포법이 종종 쌍방 체포 또는 가해자 대신 피해자의 체포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이 체포되는 것에 두려워한다.

RADAR(Respection Accuracy in Domestic Abuse Reporting) 협회에 의해 시행된 학대받는 여성들의 설문조사는 여성들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체포하지 말아 달라는 여성들의 요구에 경찰이 부합할 때 경찰관의 조치에 더욱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여성들이 가해자들이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들은 단지 경찰관들이 현재의 상황을 진정시키고 그들이 현재 직면한 특별한 순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기를 원할 뿐이다.(RADAR : Respection Accuracy in Domestic Abuse Reporting) 그러나 의무체포법은 경찰관들에게 여성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재량을 없애고 여성들이 경찰관들에게 편안하게 신고를 할 수 없게 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들로 인해 그들의 삶을 조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기게 된다. 더구나 의무체포법은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 할 것인지 아닌지 또는 고발을 철회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음으로써 피해 여성들을 다시 한번 희생시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의무체포법이 없는 주보다 의무체포법이 있는 주가 친밀한 파트너간 살인비율이 더 높다는 결론과 관련해, Iyengar는 친밀한 파트너간 살인에 있어 증가는 부분적으로 강제체포정책의 피해자 신고를 감소시키기 때문인 것에 기인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Iyengar는 이러한 법은 신고 수를 감소시키고 이것은 경찰 개입의 감소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신고수의 감소는 의무체포정책의 원래 의도하는 범죄의 억지효과를 감소시키고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을 알게 하여 피해자를 더욱 학대하게 함으로써 결국 살인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결국, 의무체포법은 피해자들이 경찰관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폭력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하고 이것은 다시 그들이 더욱 큰 위험에 처하게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위험하다. 의무체포법은 학대받는 여성들을 가해자로부터 막지 못하고 여성들이 학대를 신고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3. 소 결

가정폭력에 대한 의무체포제도는 가해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체포를 통해 보복범죄와 재범을 방지하고 위하 효과를 통해 가정폭력 발생 자체를 억지시키는데 목적을 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찰관에게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보다 적극적인 법집행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의무체포제도를 비판하는 자들은 의무체포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객관화 시킬 수 있는 연구나 통계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의무체포제도가 본 목적과는 달리, ▲ 피해 여성들이 가해자의 폭력에 대항하다 쌍방 폭력으로 체포되거나 ▲ 피해자도 원하지 않는 체포로 인해 가해자의 보복 심리가 증가하여 살인 등 중한 범죄를 야기하고 ▲ 앞서와 같은 이유로 가정폭력 신고 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의무체포제도는 가정폭력의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비난한다.

살피 보건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쌍방 체포는 의무체포법이 시행된 초기의 문제로 추정되며 앞서 미국 경찰의 가정폭력 처리 매뉴얼에서 보듯이 주 공격자를 판단하여 쌍방 체포를 하지 말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에 대한 판단 자료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체포가 중한 범죄를 야기한다는 문제는 중한 범죄의 동기가 앞서의 체포에 대한 보복으로 인한 것인지(예컨대 석방 이후 바로 살인이 발생하였는 지 등), 또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중한 범죄가 의무체포제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보복 우려로 가해자를 체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의무체포제도의 목적과 이율배반적인 것이며 보복이 우려됨에도 가해자를 체포하지 않고 피해자 안전과 범죄 억지를 위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의문이다.³⁰⁾

30) 물론 임시조치 등의 수단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체포에 비해 범죄 억지 효과도 낮으며 가해자를 일시적으로 회피하는 임시방편적 수단일 뿐으로 가해자의 범죄 심리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다고 본다. 체포 또한 가해자의 범죄 심리 자체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나 다른 대안보다는 범죄 억지 효과면에서는 크다고 판단된다.

가정폭력 신고수의 감소와 관련해서는 보다 객관적 수치화된 통계가 필요하며 의무체포제도의 부작용으로 인해 신고가 감소하였는지, 실제 의무체포제도의 본 목적에 의해 가정폭력 억지 효과가 발생하여 신고가 감소하였는지 등 어떤 요인에 의해 신고가 감소하였는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판자들이 주장하는 의무체포제도는 의무체포제도의 종류 중 의무적 체포(Mandatory arrest)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량적 체포(Discretionary arrest) 혹은 우선적 체포(Preferred arrest)에서는 경찰관에게 체포 여부에 대해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의무체포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우리나라에 의무체포제도를 도입할 경우, 가정폭력 범죄에서 가해자의 체포(특히 반의사불벌죄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죄의 경우)가 가정폭력의 재범 방지에 효과적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당위성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아울러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무체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우려되는 문제점이 없는지도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무체포제도에서도 가해자를 무조건 체포해야 하는 의무적 체포(Mandatory arrest)가 아닌 현장상황에 따라 체포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량적 체포(Discretionary arrest)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최근 국내에서는 심각해지고 증가하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의무체포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폭력 신고현장에서 경미한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다소 어려워 보이며 특히 가정폭력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폭행, 협박 등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포시 불법체포의 여지도 있어 경찰관은 가정폭력 신고현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체포하는 것을 꺼려한다.³¹⁾ 따라서 가정폭력에서 체포를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무체포제도와 같은 입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무체포제도 도입에 앞서 의무체포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미국의 의무체포제도의 연혁, 미국 주별 의무체포정책의 종류와 내용, 미국 경찰의 의무체포정책 집행 매뉴얼과 의무체포정책에 대한 비판자들의 이유와 논거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해보았다.

의무체포제도는 가해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체포를 통해 ‘가정폭력은 반드시 체포된다’는 기초를 확립함으로써 보복범죄와 재범을 방지하고 가정폭력 발생 자체를 억지시키는데 목적을 둔 제도로 체포여부에 대한 법집행자의 권한 정도에 따라 법집행자의 의무적 체포(Mandatory arrest, 23개주), 재량적 체포(Discretionary arrest, 6개주), 우선적 체포(Preferred arrest, 22개주)로 구분된다.

그중 의무적 체포(Mandatory arrest)는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관으로 하여금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게 함으로써 피혐의자의 인권침해, 가정폭력 신고 수 감소 등 의무체포제도의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비난이 제기된다.

31) 실제 필자는 일선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가정폭력 신고출동을 처리하는 경찰관들로부터 과거 수십 차례의 신고가 있었고 가해자로부터 폭행, 협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무조건적인 불처벌 의사로 인해 가정폭력 안내서를 교부하고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애로사항을 수차례 청취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의무체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의무적 체포(Mandatory arrest)보다는 재량적 체포(Discretionary arrest)를 도입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해 보았다.

1970년 후반부터 의무체포제도를 채택하고 이를 입법화하여 시행중인 미국 의무체포제도는 같은 제도를 통해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의무체포제도 도입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시행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자 몇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의무체포제도 도입을 위해 의무체포제도의 효과를 보다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검토된 바와 같이 미국에서도 의무체포제도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자료가 없어 실제 의무체포제도가 가정폭력을 줄이고 재범을 억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가정폭력 초범자의 최초 형사처분 결과에 따른 재범율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체포가 가정폭력 재범율을 낮추는 것에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의무체포제도 중 의무적 체포보다는 재량적 체포를 도입하여 의무체포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관련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의무체포제도가 표현상 의무적 체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가정폭력 체포제도’ 등으로 표현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량적 체포제도를 도입할 경우, 피체포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보다 일관된 법집행을 위해 체포를 위한 조건인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를 명시하고 상당한 이유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보다 상세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관이 합법적이고 타당한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어느 경우에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기소강제주의(No-Drop)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 미국은 1990년대 초반에 가정폭력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기소하는 의무기소 정책(No-Drop)정책을 채택하였다. 이 정책은 피해자의 기소에 대한 의지와 관계없이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기각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참여를 강제하고 사건 기각율을 감소시켰다는 평가(의무기소 정책 채택 전 최소 50%에서 최대 80%까지 오른 기소 기각률이 채택 후 10%대로 낮아짐)를 받는다.³²⁾ 이는 체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체포이후 불기소 처분시 가해자가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둔감해 질 수 있어 오히려 재범 발생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역시 기소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32) 박소현, “가정폭력의 가부장성 분석을 통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가정폭력 규제에 관한 국제 기준 및 주요국가의 법률시스템 자료 참조, 2013년

V. 참고 문헌

[국내 문헌]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해외가정폭력방지 법·정책 및 활동(2013년)
- 이영돈,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고찰, 경찰학연구 제13권 제2호(2013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가정 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사회안전망 강화에 관한 연구(2018년)
- 유지용,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현장 대응 실효성 제고방안, 치안정책연구소(2017년)
- 김재민,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미국 미시간 주경찰의 현장 대응, 경찰학연구 2005년 제8호
- 박소현, “가정폭력의 가부장성 분석을 통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가정폭력 규제에 관한 국제 기준 및 주요국가의 법률시스템 자료 참조, 2013년


[국외 문헌]

- Sherman, Lawrence W. &Richard A. Berk (April 1984). “The Minneapolis Domestic Violence Experiment”
- Means based on author’s own calculations using Supplementary Homicide Reports 1976–2003
- Samuel Walker/Charles M. Katz, the Police America 8th edition, the McGrawHill Co. 2013
- Tiffany Dempsey, Mandtory Arrest Law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Situation Research Statement (2012년 2월)

- Iyengar, Radha. "Does the Certainty of Arrest Reduce Domestic Violence: Evidence from Mandatory and Recommended Arrest Law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s.(2007): n. page. Web. 30 Jan. 2012.
- Fagan, Jeffrey, "가족 폭력의 폐지 : 억지와 설득". 범죄와 정의(1989년)
- Fagan, Jeffrey, "가정 폭력의 범죄 : 약속과 한계"(1996년)
- 엘리엇, 델 버트 S. "가족 폭력 범죄의 형사 사법 절차"(1989년)
- West Lafayette Police Department Policy Menua(2017년)
- cumberland policy policy manual (2016년)
- Bremerton Police Department Policy Manual(2019년)
- Pasadena Police Department Policy Manual (2019년)

[부록1] 본 연구원의 활동이 미국 지역 언론에 소개

<https://www.purdue.edu/newsroom/releases/2019/Q4/indiana,-south-korea-partnership-sheds-new-light-on-domestic-violence-across-the-world.html>



Research Foundation News

Home News Topics ▾ Purdue Today Media Info Experts Purdue in the News Contact

October 1, 2019


Indiana, South Korea partnership sheds new light on domestic violence across the world

WEST LAFAYETTE, Ind. – The way domestic violence calls are handled across the United States has changed dramatically over the past two decades. Now, instead of requiring that one of the parties involved in the call request action or filing charges, law enforcement officers routinely separate those involved during the initial visit and then require follow-up actions to ensure continued safety.

In South Korea today, similar to the U.S. decades ago, officers typically act only during those calls when one of the parties requests it. Now, a partnership between **Purdue University** and some top law enforcement agencies in South Korea is working to adapt U.S. procedures for handling domestic violence calls for South Korea.

Eric Dietz, a professor of computer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Purdue Polytechnic Institute**, began the partnership when he was working to create opportunities for graduate students to study law enforcement policies in South Korea.

"I visited th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which is similar to the U.S. Military Academy at West Point," Dietz said. "We were able to connect with the superintendent of South Korean police and bring him over here to Greater Lafayette to research our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calls."



A partnership between Purdue University and some top law enforcement agencies in South Korea is working to adapt U.S. procedures for handling domestic violence calls for South Korea. Pictured (from left to right) are Supt. Hyun Gun Song, South Korean Police; Capt. Terry Ruley, Tippecanoe County chief deputy; Sheriff Robert Goldsmith, Tippecanoe County; Capt. Robert Hainje, Tippecanoe County Sheriff's Office; Eric Dietz, Purdue University. (Image provided) [Download image](#)

Facebook Twitter

LinkedIn + More

Research Foundation News

- [Jaw-strengthening teether designed for children with Down syndrome](#)
- [This 'lemon' could help machine learning create better drugs](#)
- [Millions with swallowing problems could be helped through new wearable device](#)
- [Four Purdue entrepreneurs named to Forbes 2020 '30 Under 30' list](#)
- [Purdue-based Solinftec to move global headquarters to West Lafayette](#)

The superintendent, Hyun Gun Song, has been riding along with officers and deputies to see how they respond to domestic violence and other calls. Song also has been working in Dietz's lab to review statistics and data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calls and responses in the Tippecanoe County area. Dietz also has connected him with law enforcement agencies across Indiana.

"This experience provides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how the community and police work in partnership in central Indiana to create a system for stronger public safety," Song said.

Dietz, a Purdue alumnus from the **College of Engineering** and the founding executive director of Indiana'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has been working to apply quantitative data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security policies.

"My lab and research is focused on quantitative data related to security," Dietz said. "I immediately agreed to this opportunity to take part in research and the officer exchange."

Bob Goldsmith, Tippecanoe County sheriff, said, "This is an excellent opportunity for not only Superintendent Song, but for deputies to work with an officer from another country."

Dietz also has worked with the **Purdue Research Foundation Offic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o patent technologies aimed at tracking and improving public safety. For more information on licensing a Purdue innovation, contact the Offic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t otcip@prf.org.

About Purdue Research Foundation Offic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e Purdue Research Foundation **Offic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perates one of the most comprehensive technology transfer programs among leading research universities in the U.S. Services provided by this office support the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s of Purdue University and benefit the university's academic activities through commercializing, licensing and protecting Purdue intellectual property. The office is managed by the Purdue Research Foundation, which received the 2016 Innovation and Economic Prosperity Universities Award for Innovation from the Association of Public and Land-grant Universities. For more information about funding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in startups based on a Purdue innovation, contact the Purdue Foundry at foundry@prf.org. The **Purdue Research Foundation** is a private, nonprofit foundation created to advance the mission of Purdue University.

Writer: Chris Adam, 765-588-3341, cladam@prf.org

Source: Eric Dietz, jedietz@purdue.edu